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23

발의연월일: 2025. 4. 17.

발 의 자 : 윤재옥 • 김상훈 • 김정재

김기웅 · 최수진 · 김민전

서천호 · 서지영 · 김소희

박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 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의 경우 그 종사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 범죄 경력 조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들 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비인증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화물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현행법 규제체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같은 조 제6호나목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각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각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4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받지 아니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각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제51조제1항제9호의3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 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여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이 유효한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종사자가운전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지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4의2.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
	업자"란 소화물배송대행서비
	스인증사업자 및 제17조제1항
	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
	스사업자인증을 받지 아니하
	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영업점"이란 택배서비스사	5
업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	소화물배송대행서
비스인증사업자와 계약을 체	<u>비스사업자</u>
결하고, 일정한 구역을 할당	
받아 해당 구역 내에서 화물	
의 집화, 배송 등 생활물류서	
비스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란	6
생활물류서비스사업에 종사하	
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u>.</u>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 사자: 소화물배송대행서비 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 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 의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

7. (생략)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 종사의 제한) ① (생 략)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 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자(이하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종사자등"이라 한다) 가 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 유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한 경 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 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u>소화물배송</u> 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
<u> 스사업자</u>
7.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 종사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u> 자</u>
제19조의3(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사업자

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이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한다.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③ (생 략)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저 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 전자격(「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를 말한 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②・③ (현행과 같음)
세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u> 자</u>
②

따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 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소화 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4조의3에 따른 운전자격확인 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소화물배송대 행서비스종사자등이 운전자격 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운전자 격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 함한다) 해당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종사자등과 운송 위탁계 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 지 아니하거나 해지하여야 한 다.

④ (생략)

제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저

- ① (생 략)
-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게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
업자
,
③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u> 자</u>
④ (현행과 같음)
세38조(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u> 자</u>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저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1. ~ 9의2. (생 략)
9의3.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② (생 략)

제51조(과태료) ①
1. ~ 9의2. (현행과 같음)
9의3
소화물배송대행
<u>서비스사업자</u>
10.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